경북도립대학교 전공심화과정 이수학생의 국립경국대학교 졸업에 관한 특례 규정

제정 2025. 2.28.(규정 제15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북도립대학교 전문학사를 취득 후 구「경북도립대학교 학칙」제46조의2제2항(전공심화과정)에 따른 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전공심화과정학생(이하 “학생” 한다)이 국립경국대학교 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정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를 기본정신으로 한다.

1. 국립안동대-경북도립대 통·폐합 승인 통보서(2024. 6. 7.)의 재학생 및 휴학생 보호대책
2. 국립학교 설치령 부칙 제3조(폐지되는 경북도립대학교의 재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5. 2. 00.)
3. 국립경국대학교 학칙 부칙 제3조(폐지되는 경북도립대학교의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5. 3. 1.)

제3조(졸업자격인정) ① 경북도립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원칙적으로 종전의 경북도립대학교 학칙과 교육과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경북도립대학교 전문학사를 취득 후 구「경북도립대학교 학칙」제46조의2제2항의 학위를 취득하려는 학생이 국립경국대학교 학생으로 졸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경북도립대학교 졸업요건 충족
2. 졸업인증 기준 이수

② 제1항제2호의 기준은 별표의 졸업인증 기준에 따른다.

제4조(졸업 및 학위수여) ① 경북도립대학교 학생이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 모두 충족한 경우 경북도립대학교 소속 학과를 표기한 국립경국대학교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경북도립대학교 학생의 국립경국대학교 졸업에 관한 세부적인 업무처리 지침은 따로 정한다.

제5조(기타) 2030년 2월 28일 이전에 졸업하지 못하는 경북도립대학교 학생의 학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규정 제155호, 2025.2.28.)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경북도립대학교 전공심화과정 이수학생의 국립경국대학교 졸업을 위한 졸업인증 기준

▸ **영역별 세부분야에서 획득한 합산 점수가 2.0 이상**

영역	세부분야		배점	인증내역
외국어 (TOEIC 등)	TOEIC 500 이상		1.0	‣ 공인 외국어 시험의 어학점수 환산표** 참고
사회봉사	사회봉사 30시간이상		1.0	‣ 1365 자원봉사포털 실적확인서 ‣ VMS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실적확인서, ‣ 청소년자원봉사센터(두볼) 실적확인서 ‣ 교육봉사 교과목 이수도 가능
	사회봉사 20시간이상		0.5	
비교과	비교과 프로그램30		1.0	‣ 비교과 프로그램 30시간 이상
	비교과 프로그램20		0.5	‣ 비교과 프로그램 20시간 이상
자격증	자격증 (소지* 및 취득)	2개	1.5	‣ 국가기술 자격증 ‣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 한국사능력시험 3급 이상 ‣ 그 밖에 사무자동화 자격증 ・MOS 워드, MOS 엑셀, MOS 파워포인트, MOS 아웃룩
		1개	1.0	
전공	전공관련 자격증 (소지* 및 취득)		1.5	‣ 전공 관련 자격증*** (자격 취득예정자도 포함)
			1.0	‣ 그 밖에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전공 자격증

* 소지 및 취득: 경북도립대학교 전문학사 및 전공심화과정 재학 중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 졸업인증요건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졸업학기 종강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 인정 범위, 비중 판정, 점수 부여 등 졸업인증에 대한 사항은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어학점수 환산표**

영어								중국어		일본어	
TOEIC	TOEFL			TEPS (New)	IELTS	TOEIC Speaking	OPIC	HSK	CPT	JPT	JLPT
	PBT	IBT	CBT								
500	430	57	120	419 (196)	4.0	IL	IM1	3급	400	450	N3

배점	전공 관련 자격증 ***
1.5점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산업안전기사, 유치원 2급 정교사
1.0점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산업안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보육교사 2급

‣ 이 밖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자격증 인정 가능

‣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를 통해 인정되는 전공 자격증

‣ **1점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2개 취득한 경우 1.5점으로 인정**